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 - 71

제안연월일 : 1999. 11. 19.

제안자 : 거창군수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및 규제개혁 법령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개선·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점용료 미부과 금액의 상향조정(안 제6조제3항)
 - 점용료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하던 내용을
⇒ 점용료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조정
- 점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8조제3항제1호)
 - 도로법 제44조제4호(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를 점용료 전액면제 대상으로 함.
-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안 별표1)
 - 점용물의 종류 1호중 전주와 유사한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2호중 관의 종류(직경)을 세분하고, "기타의 관" 종류를 "어스양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세분함.

개정근거

- 도로법개정('99. 2. 8)
- 도로법시행령개정('96. 7. 1, '99. 8. 6)
- 건설교통부소관 규제개혁법령개정 정비대상지정 개정지시 (법무05090-10090호 '99. 3. 26)
- 조례·규칙·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본문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5조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1개	1년	60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합,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 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2,250
		직경 2.0m초과 3.0m이하			3,750
		직경 3.0m초과			5,250
	어스양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 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35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 3.0m초과			7,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설치한 것 (1월미만점용)	표시면적 1m ²	1일	100
		기 타	표시면적 1m ²	1년	15,0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것	표시면적 1m ²	1년	50
		기타의 용도			100
	아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m ²	1년	30,000
기 타			15,00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00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10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 1년인경우의 예 1,455원=1,400원 , 1,995원=1,900원)
6.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위 깊이가 지하 20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통신시설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신설 1995. 4. 22 조례 제1362호)
8.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내지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6조(현행과 같음) ③ ----- 5,000원 미만인 ----- -----</p>
<p>제8조 (점용료의 감면) ① 내지 ② (생략) ③ (생략) 1. 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내지 3(생략)</p>	<p>제8조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법 제44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 ----- 2 내지 3(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1개	1년	600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와 유사한것			900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중전화			24,1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송전탑 및 기타의것		점용 면적 1m ²	1년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기 타 이 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 관	생략	길이 1m	1년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직경 1m초과				3,0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2,250				
	기타의 관		생략	길이 1m	1년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직경 1m초과				4,5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35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 3.0m초과				7,850		직경 3.0m초과				7,850					
3. 내지 10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내지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 비 고</p> <p>1. (생략)</p> <p>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 <p>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p> <p>4 (생략)</p> <p>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 한다.(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1,445원 = 1,400원, 1,995원 = 1,950원)</p> <p>6 내지 8(생략)</p>	<p>※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단수는 -----</p> <p>3. ----- ----- 단수가 -----</p> <p>4 (현행과 같음)</p> <p>5. ----- ----- 100원 ----- ----- ----- = 1,900원)</p> <p>6 내지 8(현행과 같음)</p>